

※ 번역문은 민원 신청을 위한 참고용이며, 기존의 한글 서식에 한글로 작성하여 제출해야 함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こちらの翻訳文は民願申請の参考用であり、提出時には既存の韓国語の書式に韓国語でご記入くださいますようお願いいたします。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지 제49호서식] <개정 2022. 4. 28.>
■ 食品衛生法施行規則 [別紙第49号書式] <改正2022年4月28日>

식품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서
食品営業者地位承継届出書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하며, 뒤쪽의 첨부서류 및 유의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 []には該当項目に✓をつけ、裏面の添付書類及び留意事項を参考にしてください。 (表面)

접수번호 受付番号	접수일 受付日	발급일 発給日	처리기간 処理期間	뒤쪽참조 裏面を参照
승계를 하는 사람 承継する人	성명(법인인 경우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氏名 (法人の場合は法人の名称及び代表者の氏名)		주민등록번호(법인인 경우 법인번호) 住民登録番号 (法人の場合は法人番号)	
	주소(법인인 경우 주된 사무지의 소재지) 住所 (法人の場合は主たる事務所の所在地)		전화번호 電話番号	
승계를 받는 사람 承継を受けた人	성명(법인인 경우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氏名 (法人の場合は法人の名称及び代表者の氏名)		주민등록번호(법인인 경우 법인번호) 住民登録番号 (法人の場合は法人番号)	
	주소(법인인 경우 주된 사무지소재지) 住所 (法人は主な事務所の所在地)		전화번호 電話番号	
	등록기준지(허가를 받아야 하는 영업만 해당) 登録基準地 (許可を受ける必要がある営業のみ該当)			
영업소 営業所	명칭(상호) 名称 (商号)	변경 전 変更前		
		변경 후 変更後		
	영업의 종류 営業の種類			
	소재지 所在地	전화번호 電話番号		
허가(신고·등록) 번호 許可 (申告・登録) 番号				
승계사유 承継事由	[] 양도·양수 [] 상속 [] 그 밖의 사유() [] 譲渡・譲受 [] 相続 [] その他の事由 ()			

분실사유 紛失事由	
--------------	--

「식품위생법」 제3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食品衛生法」第39条第3項及び同法施行規則第48条第1項に基づき、上記の通り届け出ます。

년 월 일
年 月 日

신고인(승계를 받는 사람)

(서명 또는 인)

届出人 (承継を受けた人)

(署名又は印)

대리인이 식품영업자 지위승계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위임장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代理人が食品営業者地位承継届を提出する場合は、下記の委任状を作成してください。				
위 임 장 委任状	본인은 영업자의 지위승계 신고와 관련한 모든 사항을 아래 대리인에게 위임합니다. 私は、営業者の地位承継届に関するすべての事項を下記の代理人に委任します。 신고인: (서명 또는 인) 届出人: (署名又は印)			
대리인 인적사항 代理人の基本事項	성명 氏名	생년월일 生年月日	전화번호 電話番号	신고인과의 관계 届出人との関係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地方食品医薬品安全庁長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特別自治市長・特別自治道知事・市長・郡守・区庁長

귀하
殿

첨부서류 添付書類	<p>1. 공통서류 1. 共通書類</p> <p>가. 영업허가증, 영업신고증 또는 영업등록증 イ. 営業許可証、営業届出証又は営業登録証 나. 영업자 지위 승계를 증명할 수 있는 다음의 서류 ロ. 営業者の地位承継を証明できる下記の書類</p> <p>1) 양도의 경우: 양도·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 譲渡の場合: 譲渡・譲受を証明する書類の写し</p> <p>2) 상속의 경우: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2) 相続の場合: 相続人であることを証明する書類 3) 그 밖에 해당 사유별로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それ以外に当該事由別に営業者の地位を承継したことを証明できる書類</p> <p>다. 「식품위생법」 제41조제2항 본문에 따라 미리 식품위생교육을 받은 경우: 교육이수증 ハ 「食品衛生法」第41条第2項本文に基づきあらかじめ食品衛生教育を受けた場合: 教育履修証 라. 양수인이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를 위임한 경우: 위임인의 자필서명이 있는 위임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및 위임장 二. 譲受人が営業者地位承継届出を委任した場合: 委任者の自筆署名がある委任者の身分証明書の写し及び委任状</p> <p>2.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호 및 제1호의2의 영업: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의2에 따른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2. 「多数利用営業所の安全管理に関する特別法施行令」第2条第1号及び第1号の2の営業: 「多数利用営業所の安全管理に関する特別法」第13条の2による火災賠償責任保険に加入したことを証明する書類 3.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9호의 공유주방 운영업: 법 제44조의2 및 영 제30조에 따른 책임보험에 가입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3. 「食品衛生法施行令」第21条第9号のシェアキッチン運営業: 法第44条の2及び令第30条に基づく責任保険に加入したことを証明する書類</p>	<p>수수료 手数料 9,300원 9,300ウォン</p> <p>(「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8조제2항에 따라 상속인이 영업자의 지위승계 신고와 폐업신고를 함께 하는 경우에는 수수료 면제합니다) (「食品衛生法施行規則」第48条第2項に基づき相続人が営業者の地位承継届出と廃業届出を一緒に行う場合は、手数料を免除します)</p>
담당 공무원확인 사항 担当公務員 確認事項	<p>1. 건강진단결과서(「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9조에 따른 건강진단 대상자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1. 健康診断結果書(「食品衛生法施行規則」第49条に基づく健診対象者の場合のみ該当) 2.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의 가족관계증명서(상속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2. 「家族関係の登録等に関する法律」第15条第1項第1号の家族関係証明書(相続の場合のみ該当)</p>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行政情報の共同利用に関する同意書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私は、本件の業務処理に関して、担当公務員が「電子政府法」第36条第1項に基づく行政情報の共同利用を通じて上記の担当公務員確認事項を確認することに同意します。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同意しない場合には、関連書類を届出人本人が提出しなければなりません。

신고인
申告人

(서명 또는 인)
(署名又は印)

처리기간
処理期間

1. 허가 및 등록사항: 3일
1. 許可及び登録事項: 3日

2. 신고사항: 즉시
2. 届出事項: 即時

유의 사항
留意事項

1. 영업허가증, 영업신고증 또는 영업등록증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분실사유란에 그 사유를 적고 영업허가증, 영업신고증 또는 영업등록증은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1. 営業許可証、営業届出証又は営業登録証を紛失した場合は、紛失事由欄にその事由を記入し、営業許可証、営業届出証又は営業登録証は添付しなくても構いません。
2. 상속인이 영업자의 지위승계 신고와 폐업 신고를 함께 하려는 경우에는 위의 첨부서류 중 제1호 및 제2호의 서류(지위승계 신고를 위임한 경우에는 제5호의 서류를 포함합니다)만 첨부하면 됩니다.
2. 相続人が営業者の地位承継届と廃業届と一緒に提出する場合は、上記の添付書類のうち第1号及び第2号の書類（地位承継届を委任した場合は第5号の書類を含む）のみ添付してください。

행정처분 등의 내용 고지 및 가중처분 대상업소 확인서
行政処分等の内容告知及び加重処分対象営業所確認書

1. 양도인은 최근 1년 이내에 다음과 같이 「식품위생법」 제71조, 제72조, 제74조부터 제76조까지, 제8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 및 별표 23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았다는 사실 및 행정제재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사실(최근 1년 이내에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없다는 사실)을 양수인에게 알려주었습니다.
1. 譲渡人は、直近1年以内に下記の通り「食品衛生法」第71条、第72条、第74条から第76条まで、第80条、同法施行規則第89条及び別表23に基づき行政処分を受けたという事実及び行政制裁処分の手続が進行している事実（直近1年以内に行政処分を受けた事実がない場合は、その事実）を譲受人に知らせました。
- 가. 최근 1년 이내에 양도인이 받은 행정처분
- イ. 直近1年以内に譲渡人が受けた行政処分

처분받은 날 処分を受けた日	행정처분의 내용 行政処分の内容	행정처분의 사유 行政処分の事由

- ### 나. 행정제재처분 절차 진행사항

□. 行政制裁処分手続の進行事項

적발일 摘発日	식품위생법령 위반내용 食品衛生法令違反内容	진행 중인 내용 進行中の内容

- 1) 최근 1년 이내에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위 표의 처분받은 날란에 「없음」이라고 적어야 합니다.
- 1) 直近1年以内に行政処分を受けた事実がない場合は、上表の「処分を受けた日」の欄に「なし」と記入してください。
- 2) 양도・양수허가 담당 공무원은 위 행정처분의 내용을 행정처분대장과 대조하여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양도인 및 양수인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위 란을 보완하도록 해야 합니다.
- 2) 譲渡・譲受許可を担当する公務員は、上記の行政処分の内容を行政処分台帳と照合して、一致するかどうかを確認し、一致しない場合は譲渡人及び譲受人にその事実を知らせ、上記の欄を補完するようにしなければなりません。
2. 양수인은 위 행정처분에서 지정된 기간 내에 처분 내용대로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처분을 받은 위반사항이 다시 적발된 때에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 및 별표 23에 따라 양도인이 받은 행정처분의 효과가 양수인에게 승계되어 가중 처분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2. 譲受人は、上記の行政処分指定された期間内に処分内容どおりに履行しなかったり、行政処分を受けた違反事項が再び摘発された場合は、「食品衛生法施行規則」第89条及び別表23に基づき譲渡人が受けた行政処分の効果が譲受人に承継され、加重処分されるという事実を承知していることを確認します。

년 월 일
年 月 日

양도인	성명	(인) 또는 서명
讓渡人	氏名	(印) 又は署名
	주소	
	住所	

양수인
譲受人

성명
氏名

주소
住所

(인) 또는 서명
(印) 又は署名

